

#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

## 제1조(목적)

본 시설에서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 대한 정서적·물리적 학대의 예방과 대응의 지침을 제정하여 노인들이 존경과 존엄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데 있음

## 제2조(학대의 정의)

노인학대"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)

## 제3조(학대의 행위)

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언어·정서적, 성적,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자기방임 및 유기를 행함을 말한다

## 제4조(학대행위 금지)

노인복지법 제39조의9(금지행위)에 의거, 누구든지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 제5조(신체적 폭행)
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 제6조(정서적 수치심)
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# 제7조(방임행위)

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# 제8조(노인의 이용행위)
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# 제9조(착취)
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### 제10조(학대 피해자의 대응조치)

노인의학대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.

### 제11조(시설에서의 학대방지과 응급조치)

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교육, 조사, 인식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.

## □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

### 1)신고요령

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2항)

-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
-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## 2)신고방법

-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
-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
- 서신, 온라인 등을 이용

## 3)신고내용

- 피해 노인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
-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

## 4)신고자의 비밀보장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,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(노인복지법제 39조의 6 제 3항)